

1. 개정이유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조화로운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을 편중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특정시설 중 운동시설은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제한토록 하고, 드론조종연습장을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설치를 허용하여 공원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드론조종연습장 설치허용 확대(안 제9조제5호·제10호)

국민 여가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조종연습장을 공원시설로 허용한 바 있으나, 도시공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는 설치 불가하여 드론 연습을 위한 공간 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드론조종연습장 설치 허용

나.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확대 허용(안 제11조제5호)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운동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동시설의 경우 근린공원에서 조화로운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편중설치를 제한하는 특정공원시설에 해당하여 충분한 운동시설 설치 곤란하므로,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근

린공원 내 특정공원시설로 정의하여 운동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
다.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5호파목)
도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도 교양시설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 및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교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기타 교양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0.25. ~ 12.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협의 요청(국조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본문 중 “가목, 나목 및 마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한정하고,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별표 3의2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한정한다) 및 별표 1 제9호바목”을 “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3의2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및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운동시설”을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운동시설”로 한다.

별표 1 제5호과목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을 “교양함양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①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u>가목, 나목 및 마목</u> 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	5.		<u>가목</u> <u>및 나목</u>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 9. (생략)

10.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유흥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옛무덤, 성터,

----- 경우로 한정하고,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별표 3의2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 9. (현행과 같음)

10. -----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한다)·편익시설, 동물놀이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표 1 제9호바목의 시설[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체육공원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

한정한다), 별표 1 제9호바목(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3의2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및 바목-----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행위를 수
반하는 운동시설

다.

⑥ ~ ⑨ (생략)

--.

⑥ ~ ⑨ (현행과 같음)